

고 양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 보

【제 1103 호】

2014년 08월 26일 (화)

선 람	기 관 의 장

회 랑							
-----	--	--	--	--	--	--	--

차 례

규 칙

고양시 규칙 제902호	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1
고양시 규칙 제903호	고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시행규칙 폐지 규칙	14
고양시 규칙 제904호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6

입 법 예 고

고양시 입법예고 제2014-44호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고양시 입법예고 제2014-45호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고 시

고양시 고시 제2014-249호	도로명주소 고시	41
고양시 고시 제2014-250호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44
고양시 고시 제2014-251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46
고양시 고시 제2014-25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150호선(前소로1-1, 소로3-3, 소로 3-13호선):동산취락}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48
고양시 고시 제2014-253호	도시계획시설(대자1-5호 주차장: 대자동마을 주차장 조성 공사)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51

발행 : 고 양 시

편집 : 공보담당관

(우) 412-70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10(주교동 600) ☎ (031) 8075-2095

공 고

고양시 공고 제2014-1183호	도시계획시설(중로3-97호선 소개울길)사업 공사완료 공고	53
고양시 공고 제2014-1184호	도시계획시설(대로2-11호선:호국로 가감차로 설치공사) 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공람공고	54

발행 : 고 양 시

편집 : 공보담당관

(우) 412-70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10(주교동 600) ☎ (031) 8075-2095

고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최 성 인

2014년 8월 26일

고양시 규칙 제902호

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① 「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2. 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3. 발명 명세서
4. 발명 요약서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 및 요약서를 준용한다.

제3조(발명의 승계결정)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승계결정을 하려면 해당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인 가치와 산업분야에서의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의 신고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계결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③ 승계결정 후 특허출원에 따르는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제4조(권리의 양도)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양도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조례 제21조에 따른 권리 등을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양도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유발명 양도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자유발명 설명서(별지 제5호서식)
3. 자유발명 명세서
4. 특허증 사본

제6조(처분의 공고) 시장은 시유지적재산권을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려는 경우 입찰일 7일 전까지 해당 시유지적재산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예정가격의 결정) ① 시장은 시유지적재산권을 유상으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8조(계약서의 작성) ① 시장이 시유지적재산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통상(전용)실시권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통상실시 및 전용실시의 계약기간은 계약 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수익계약 신청) 수익계약으로 시유지적재산권의 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수익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유지적재산권의 실시예 관한 사업계획서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3.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10조(처분결과의 통지) 시장이 시유지적재산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과		정책기획담당관
입 안 자	과 장 직위 · 성명	정책기획담당관 박 동 길
	담 당 직위 · 성명	정책평가팀장 김 승 균
	담 당 자 성명 · 전화	손 진 아 (031-8075-2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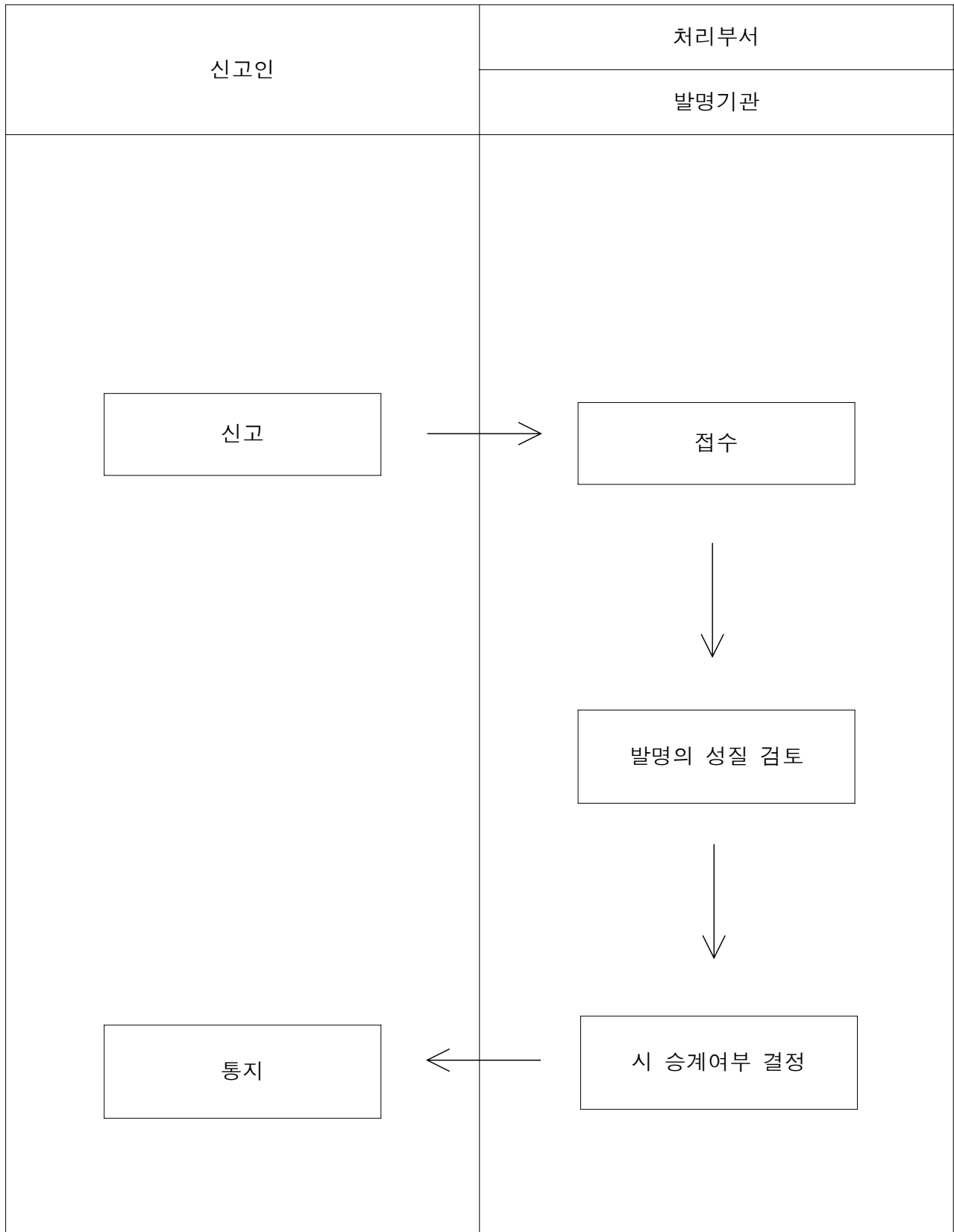
■ [별지 제1호서식] (제2조제1항제1호 관련)

(앞 쪽)

직무발명 신고서				
발명자	성 명	한글 :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현재 : (발명당시 :)		
	직급·직위	현재 : (발명당시 :)		
발명의 종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발명의 명칭				
<p>「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5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고 인 (서명 또는 인)</p> <p>고양시장 귀하</p>				
<p>첨부서류 : 1. 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발명 명세서 1부 3. 발명 요약서 1부</p>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 소속기관의 업무

- ※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발명자가 소속한 기관의 업무범위를 기재하되, 특히 해당 직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연구·시험 등에 관한 기능의 유무에 대하여 기재할 것

2. 발명자의 직무

- ※ 소속기관에서의 해당 발명자의 직무내용을 기재할 것

3. 직무발명의 성질

- ※ 해당 직무발명이 소속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그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직무에 속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기재할 것
(예, 본 발명은 00년 ○○연구사업 수행 중 발명한 것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음)
- ※ 민간기업 등과 공동연구 시 공동연구를 수행한 내용 기재

4. 발명의 실용성

- ※ 해당 발명의 실용가치, 이용가능도, 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발명자가 파악한 범위에서 기재

5. 발명자별 지분을

- 발명자 지분율
- ※ 발명자의 성명 및 지분율 기재
- 공동출원자
- ※ 민간기업 등과 공동출원 시 공동출원자 및 지분율 기재

20 년 월 일

발명의 명칭		
발 명 자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 ※ 발명자 전원 기재 및 서명

■ [별지 제3호서식] (제4조 관련)

양도증(지분 표시)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등록번호)					지분율
양도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소속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소속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소속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소속				
양수인	성명	고양시	시장		
	주소				
<p>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 「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6조에 따라 고양시에 양도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고양시장 귀하</p>					

■ [별지 제4호서식] (제5조제1호 관련)

자유발명 양도 신청서							
발명자	성 명		한 글		주민등록번호		
			한 문				
	주 소						
	소 속	현 재			직 책	현 재	
발명당시			발명당시				
발명의 표시	발명의 종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발명의 내용		
	발명의 명칭						
<p>「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1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을 고양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인)</p> <p>고양시장 귀하</p>							
<p>첨부 1. 자유발명 설명서 1부. 2. 자유발명 명세서 1부. 3. 특허증 사본 1부.</p>							

자유발명 설명서

1. 발명의 실용성

※ 해당 발명의 실용가치, 이용가능도, 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발명자가 파악한 범위에서 기재

2. 발명자별 지분율

○ 발명자 지분율

※ 발명자의 성명 및 지분율 기재

○ 공동출원자

※ 민간기업 등과 공동출원 시 공동출원자 및 지분율 기재

20 년 월 일

발명의 명칭		
발명자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 발명자 전원 기재 및 서명

■ [별지 제6호서식] (제8조제1항 관련)

통상(전용)실시권 계약서					
피 계 약 자	명 칭(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휴 대 전 화		전화번호		
	주 소				
권리의 표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등록 제 호			
발명(고안)의 명칭					
처분의 종류		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			
실시권의 범위		1. 실시수량 : 2. 실시범위 -실시지역 : -실시내용 :			
실시기간					
처분금액(실시료)					
지급방법(정산방법)					
<p>「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계약일 : 20 년 월 일</p> <p>갑 : 고양시(고양시장) (인)</p> <p>을 : (인)</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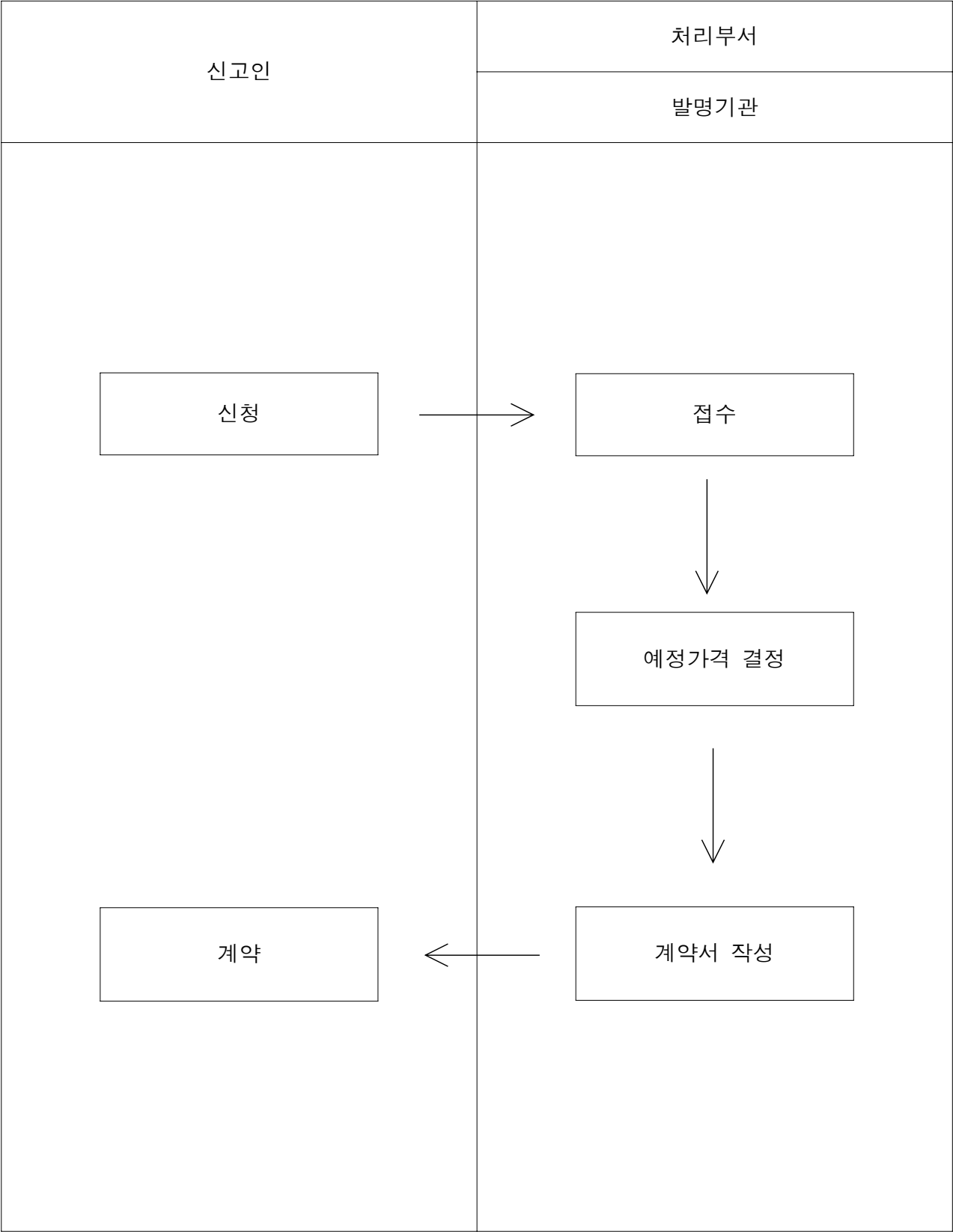
■ [별지 제7호서식] (제9조 관련)

(앞 쪽)

수의계약 신청서				
신청인	① 명칭(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④ 권리의 표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출원(등록) 제 호		
⑤ 발명(고안)의 명칭				
⑥ 처분의 종류		☐ 매수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⑦ 실시범위		기간 : 지역 : 내용 :		
⑧ 견적금액				
⑨ 수의계약 근거				
<p>「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고양시장 귀하</p>				
<p>※ 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사유지적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 3.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 제정

□ 제정이유

- 이 규칙은 「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가.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결정을 하려면 해당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인 가치와 산업분야에서의 이용성을 고려토록 하고 승계결정 후 특허 출원에 따르는 비용은 시장이 부담함(안 제3조)
- 나. 시유지적재산권을 유상으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발명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함(안 제7조)
- 다. 시유지적재산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통상(전용)실시권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함(안 제8조)
- 라. 시유지적재산권을 처분한 경우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함(안 제10조)

고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고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최 성 인

2014년 8월 26일

고양시 규칙 제903호

고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고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문화예술과
입 안 자	과 장 직위·성명	문화예술과장 유 한 우
	팀 장 직위·성명	문화예술팀장 김 봉 민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춘 우 (8075-3383)

고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시행규칙 폐지

□ 폐지이유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심의회 및 설치 관리에 관련된 사항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었으나 2011년 11월 25일 개정으로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이 삭제됨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경기도문화예술진흥 조례」에 건축물 미술장식(작품) 심의회 및 설치,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제정하였고 그에 따른 업무가 시·도지사에게 권한위임 됨에 따라 2014년 2월 28일 「고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가 폐지됨.
- 「고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동 규칙 폐지”

고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최 성 인

2014년 8월 26일

고양시 규칙 제904호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 적응과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구성 등)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국장
- 나.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과장
- 다. 경찰서 신변보호담당관
- 라. 고용센터 취업보호담당관

2. 위촉직 위원

가. 지역적응센터의 장

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지역 담당 전문 상담사

다. 지역 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 및 복지단체 등 각종 민간 지원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라.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 문화생활 지원 및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4.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적 안정적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운영) ①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으로 알게 된 북한 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7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북한 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마이스산업육성과
입 안 자	과 장 직위 · 성명	마이스산업육성과장 김 석 진
	팀 장 직위 · 성명	평화인권도시팀장 박 상 익
	담 당 자 성명 · 전화	윤 금 숙 (8075-3533)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 제정이유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제49조제1항(권한의 위임)에 따라 지역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에서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으로 시장·군수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나.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지역협의회 위원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년 8 월 26 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의 위원회 구성원의 자격 변동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된 교육의원제 폐치 요인을 반영하여 경기도 교육위원을 삭제하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교육이전경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 영향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의 포괄편성 금지, 대상사업 조기 선정 검토를 위해 심의위원회 개최시기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위원회 구성 관련 교육의원제 폐지에 따라 경기도 교육위원 삭제 (안 제7조제3항)
- 나. 심의위원회 개최시기를 명문화 하고자 함 (안 제10조제1항, 제2항)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 조문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년 9월 15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평생교육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600번지)

○ 전 화 : 평생교육과 교육협력팀 (031-8075-228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 자치법규명 :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시”를 “고양시”로 하고, “각급 학교 (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 또는 각급 학교에 교육지원사업”을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 또는 교육지원사업으로 한다.

제2조 중 “각급 학교”를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7조제1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교육업무 담당 국장
 - 2.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 3. 고양시의회 의원
 - 4. 사회단체관계자
 - 5. 학교 교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6.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9조 중 “인”을 “명”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회는 매년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 한다
 -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
 -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제11조 제1항 제2호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고양시”를 “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밖에”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2조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3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14조제1항에 의하여”를 “제14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평생교육과
입안자	과장 성명	평생교육과장 윤 홍 구
	팀장 성명	교육협력팀장 이 기 룬
	담당자 성명·전화	한 은 희 (031-8075-228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u>의하여</u> 고양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u>시</u>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u>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u>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 또는 각급 학교에 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u>따라</u><u>고양시</u> <u>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 또는 교육지원사업</u></p>
<p>제2조(교육지원사업)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발전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및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u>각급 학교</u>에 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p>	<p>제2조(교육지원사업)<u>“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u>에..... </p>
<p>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 및 각급 학교에 시행할 수 있는 교육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3조(보조사업의범위)..... </p>

현행	개정안
<p>1. ~ 5. (생략)</p> <p>6. <u>기타</u>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p> <p>제4조(보조사업의 기준액)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예산의 <u>범위 안에서</u> 지원할 수 있다.</p> <p>제5조(보조사업의 신청 등) ① 보조사업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각급 학교장은 <u>각호의</u>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5. <u>기타</u>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생략)</p> <p>1. ~ 4. (생략)</p> <p>5. <u>기타</u>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6조(교육발전심의위원회) 각급 학교 보조사업의 적정하고 균형 있는 지원 및 <u>기타</u> 교육관련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양시 교육발전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5. (현행과 같음)</p> <p>6. <u>그 밖에</u>.....</p> <p>.....</p> <p>제4조(보조사업의 기준액)<u>범위에서</u></p> <p>제5조(보조사업의 신청 등) <u>각 호의</u>.....</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그 밖에</u></p> <p>② (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그 밖에</u></p> <p>제6조(교육발전심의위원회)<u>그 밖의</u></p>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생략)</p> <p>③ 교육업무 담당 국장, 고양교육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시의회 의원, 경기도 교육위원, 사회단체관계자, 그 밖의 교육에 관심 있는 인사 및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④ (생략)</p> <p>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교육업무 주관과장이 되며,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p> <p>제10조(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p>	<p>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업무 담당 국장 2.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3. 고양시의회 의원 4. 사회단체관계자 5. 학교 교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6.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p>④ (현행과 같음)</p> <p>제9조(간사).....1명을.....</p> <p>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p>

현행	개정안
<p>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p> <p>2.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p> <p>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p> <p><신설></p> <p>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11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보조사업 범위의 우선순위</p> <p>2. 당해연도 보조사업 대상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p> <p>3. 고양시 교육지원사업방향 및 새로운 지원사업의 제시</p> <p>4.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p> <p>② (생략)</p>	<p>② 정기회는 매년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p> <p>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p> <p>2.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p> <p>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p> <p>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11조(기능) ①.....</p> <p>..... .</p> <p>1.</p> <p>2. <u>해당연도</u></p> <p>.....</p> <p>3. <u>시</u></p> <p>.....</p> <p>4. <u>그 밖에</u> 시장이 <u>회의에</u> 부치는 사항</p> <p>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3조(회의록) (생략) 1. ~ 3. (생략) 4. <u>기타</u>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1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통지 등) ①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령의 <u>범위 안에서</u>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p> <p>제16조(보고 및 검사) ① (생략) 1. ~ 3. (생략) 4. <u>기타</u>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생략)</p>	<p>12조(수당) <u>범위에서</u>.....</p> <p>제13조(회의록)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u>그 밖에</u></p> <p>제1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통지 등) ①..... 제5조에 따른 ②..... <u>범위에서</u>.....</p> <p>제16조(보고 및 검사)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u>그 밖에</u> 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③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시 소속 공무원이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고자 할 때에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제17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각급 학교의 장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생략)</p> <p>1. ~ 3. (생략)</p> <p>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였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p> <p>③ (생략)</p>	<p>③.....제2항에 따라</p> <p>제17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제14조 제1항에 따라</p> <p>② (현행과 같음)</p> <p>1. ~ 3. (생략)</p> <p>4.에 따른</p> <p>③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⑥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6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신규 공공체육시설 건립에 따라 관련 사용료를 신설하고 일부 체육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사용료 규정의 단서 내용 삭제(제9조제1항)
나. 신규 공공체육시설(실내야구연습장) 사용료를 신설하고 일부 체육 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별표 1)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년 9월 15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체육진흥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 전 화 : 031)8075-2323

○ FAX : 031)8075-492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단서를 삭제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부터 별표 5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체육진흥과
입안자	과장 성명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팀장 성명	체육정책팀장 박교원
	담당자 성명·전화	이승원 (031-8075-2323)

【별표 1】

전 용 사 용 료

시 설 별		사용구분		사 용 료 (단위 : 원)			
				체 육 경 기		체육이외 행사	
주경기장	육상장(트랙)	주 간	4시간	40,000	60,000	200,000	300,000
		야 간	〃	60,000	90,000	300,000	400,000
	축구잔디구장	주 간	3시간	660,000	2,000,000	1,500,000	2,200,000
		야 간	〃	1,500,000	2,400,000	2,000,000	2,600,000
	보조경기장	주 간	2시간	200,000	300,000	300,000	400,000
		야 간	〃	240,000	360,000	360,000	480,000
실내체육관	주 경 기 장	주 간	4시간	80,000	100,000	450,000	550,000
		야 간	〃	100,000	130,000	550,000	650,000
	보조경기장	주 간	4시간	30,000	50,000	100,000	150,000
		야 간	〃	50,000	70,000	120,000	170,000
일반축구장 (인조잔디)		주 간	1시간	25,000	35,000	35,000	50,000
		야 간	〃	30,000	42,000	50,000	70,000
인라인스케이트장		주 간	4시간	50,000	90,000	100,000	200,000
		야 간	〃	80,000	100,000	200,000	300,000
테 니 스 장		면 당	4시간	24,000	32,000	-	-
수 영 장 (다이빙풀 제외)		주 간	4시간	400,000	600,000	800,000	1,200,000
		야 간	〃	600,000	900,000	1,200,000	1,800,000
다 이 빙 풀		주 간	3시간	200,000	300,000	400,000	600,000
		야 간	〃	300,000	450,000	600,000	900,000
빙 상 장		06:00 ~ 10:00 20:00 ~ 24:00	1시간	80,000	90,000	400,000	400,000
		10:00 ~ 20:00	〃	90,000	120,000	400,000	400,000
인공암벽장		주 간	2시간	25,000	30,000	-	-
		야 간	〃	37,500	45,000	-	-
체육회관 연회장		1시간		-	-	60,000	72,000
이 벤 트 홀		1시간		-	-	20,000	24,000
다목적 체육관		주 간	4시간	60,000	90,000	220,000	330,000
		야 간	〃	90,000	135,000	330,000	495,000
전용배드민턴장		주 간	4시간	60,000	90,000	220,000	330,000
		야 간	〃	90,000	135,000	330,000	495,000
야구장		주 간	3시간	80,000	120,000	180,000	270,000
		야 간	〃	110,000	170,000	280,000	600,000
리틀 야구장		주 간	3시간	56,000	84,000	180,000	270,000
		야 간	〃	77,000	119,000	280,000	600,000
실내야구연습장		주 간	2시간	30,000	45,000	110,000	160,000
		야 간	〃	45,000	65,000	160,000	220,000
스쿼시, 라켓볼장		주 간	1시간	20,000	30,000	40,000	60,000
		야 간	〃	30,000	45,000	60,000	90,000
파크골프장		주 간	2시간	50,000	80,000	-	-
		야 간	〃	80,000	120,000	-	-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구잔디구장 라인마킹은 사용자가 함 ○ 일반축구장의 천연잔디축구장은 인조잔디구장의 30%를 가산함. 단 토사축구장은 무료 ○ 주경기장 사용료는 육상장, 축구잔디구장 사용료를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테니스장의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30%, 체육회관 연회장, 이벤트홀의 야간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의 20%를 가산함 ○ 기준시간을 초과한 사용허가 시,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환산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단, 빙상장은 30분 단위의 환산요금 적용할 수 있다. ○ 상기의 전용사용료는 부속시설 사용이 포함되지 않으며 부속시설 사용 시는 별도 사용료(별표 5)를 납부하여야 한다.
-----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사용료)</p> <p>① <u>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부터 별표 5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수탁기관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u></p> <p>② ~ ③ (생략)</p>	<p>제9조(사용료)</p> <p>① <u>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부터 별표 5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u></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현행

[별표 1]

전용사용료

시 설 별	사용구분	사 용 료 (단위 : 원)			평 일	제약이의 행사	
		평 일	토공휴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주 경 기 장	육상장(트랙)	주 간 4시간	40,000	60,000	200,000	300,000	300,000
		야 간 "	60,000	90,000	300,000	400,000	400,000
	축구전대구장	주 간 3시간	660,000	2,200,000	1,500,000	2,200,000	2,200,000
		야 간 "	1,500,000	2,400,000	2,000,000	2,400,000	2,400,000
	보조경기장	주 간 2시간	200,000	300,000	300,000	400,000	400,000
실 내 체 육 관		야 간 "	240,000	360,000	360,000	480,000	480,000
	주 경 기 장	주 간 4시간	80,000	100,000	450,000	550,000	550,000
		야 간 "	100,000	130,000	550,000	650,000	650,000
	보조경기장	주 간 4시간	30,000	50,000	100,000	150,000	150,000
		야 간 "	50,000	70,000	120,000	170,000	170,000
일반체육관 (인조잔디)	주 간 1시간	25,000	35,000	35,000	35,000	50,000	50,000
	야 간 "	30,000	42,000	50,000	50,000	70,000	70,000
	주 간 4시간	50,000	90,000	100,000	100,000	200,000	200,000
	야 간 "	80,000	100,000	100,000	200,000	300,000	300,000
	면 당	24,000	32,000	32,000	-	-	-
테 니 스 장 (다이빙풀 제외)	주 간 4시간	400,000	600,000	800,000	800,000	1,200,000	1,200,000
	야 간 "	600,000	900,000	1,200,000	1,200,000	1,800,000	1,800,000
	주 간 3시간	200,000	300,000	400,000	400,000	600,000	600,000
	야 간 "	300,000	450,000	600,000	600,000	900,000	900,000
	06:00 ~ 10:00 20:00 ~ 24:00	80,000	9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빙 상 장	주 간 2시간	90,000	12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야 간 "	25,000	30,000	-	-	-	-
인공합빙장	주 간 2시간	37,500	45,000	-	-	-	-
	야 간 "	-	-	-	-	-	-
체육회관 연회장	1시간	-	-	60,000	60,000	72,000	72,000
	이벤트홀	-	-	20,000	20,000	24,000	24,000
다목적 체육관	주 간 4시간	60,000	90,000	220,000	330,000	330,000	330,000
	야 간 "	90,000	135,000	330,000	495,000	495,000	495,000
전용배드민턴장	주 간 4시간	60,000	90,000	220,000	330,000	330,000	330,000
	야 간 "	90,000	135,000	330,000	495,000	495,000	495,000
	주 간 3시간	80,000	120,000	180,000	270,000	270,000	270,000
	야 간 "	110,000	170,000	280,000	400,000	400,000	400,000
	리틀 야구장	주 간 3시간	56,000	84,000	180,000	270,000	270,000
<신 설>	주 간 1시간	20,000	30,000	40,000	60,000	60,000	60,000
	야 간 "	30,000	45,000	60,000	90,000	90,000	90,000
스퀘시, 라켓볼장	주 간 2시간	50,000	80,000	-	-	-	-
	야 간 "	80,000	120,000	-	-	-	-
파크볼프장	주 간 1시간	20,000	30,000	40,000	60,000	60,000	60,000
	야 간 "	30,000	45,000	60,000	90,000	90,000	90,000
비 고	주 간 2시간	50,000	80,000	-	-	-	-
	야 간 "	80,000	120,000	-	-	-	-
○ 축구전대구장 라인바깥은 사용자가 함 ○ 일반체육관의 천연잔디축구장은 인조잔디구장의30%를 가산함. 단 토사축구장은 무료 ○ 주경기장 사용료는 육상장, 축구전대구장 사용료를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테니스장의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30%, 체육회관 연회장, 이벤트홀의 야간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의20%를 가산함 ○ 기온시간을 초과한 사용허가 시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환산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단, 평상장은 30분 단위의 환산요금 적용할 수 있다. ○ 상기의 전용사용료는 부속시설 사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부속시설 사용 시는 별도 사용료별표 5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안

[별표 1]

전용사용료

시 설 별	사용구분	사 용 료 (단위 : 원)			평 일	제약이의 행사	
		평 일	토공휴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주 경 기 장	육상장(트랙)	주 간 4시간	40,000	60,000	200,000	300,000	300,000
		야 간 "	60,000	90,000	300,000	400,000	400,000
	축구전대구장	주 간 3시간	660,000	2,200,000	1,500,000	2,200,000	2,200,000
		야 간 "	1,500,000	2,400,000	2,000,000	2,400,000	2,400,000
	보조경기장	주 간 2시간	200,000	300,000	300,000	400,000	400,000
실 내 체 육 관		야 간 "	240,000	360,000	360,000	480,000	480,000
	주 경 기 장	주 간 4시간	80,000	100,000	450,000	550,000	550,000
		야 간 "	100,000	130,000	550,000	650,000	650,000
	보조경기장	주 간 4시간	30,000	50,000	100,000	150,000	150,000
		야 간 "	50,000	70,000	120,000	170,000	170,000
일반체육관 (인조잔디)	주 간 1시간	25,000	35,000	35,000	35,000	50,000	50,000
	야 간 "	30,000	42,000	50,000	50,000	70,000	70,000
	주 간 4시간	50,000	90,000	100,000	100,000	200,000	200,000
	야 간 "	80,000	100,000	100,000	200,000	300,000	300,000
	면 당	24,000	32,000	32,000	-	-	-
테 니 스 장 (다이빙풀 제외)	주 간 4시간	400,000	600,000	800,000	800,000	1,200,000	1,200,000
	야 간 "	600,000	900,000	1,200,000	1,200,000	1,800,000	1,800,000
	주 간 3시간	200,000	300,000	400,000	400,000	600,000	600,000
	야 간 "	300,000	450,000	600,000	600,000	900,000	900,000
	06:00 ~ 10:00 20:00 ~ 24:00	80,000	9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빙 상 장	주 간 2시간	90,000	12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야 간 "	25,000	30,000	-	-	-	-
인공합빙장	주 간 2시간	37,500	45,000	-	-	-	-
	야 간 "	-	-	-	-	-	-
체육회관 연회장	1시간	-	-	60,000	60,000	72,000	72,000
	이벤트홀	-	-	20,000	20,000	24,000	24,000
다목적 체육관	주 간 4시간	60,000	90,000	220,000	330,000	330,000	330,000
	야 간 "	90,000	135,000	330,000	495,000	495,000	495,000
전용배드민턴장	주 간 4시간	60,000	90,000	220,000	330,000	330,000	330,000
	야 간 "	90,000	135,000	330,000	495,000	495,000	495,000
	주 간 3시간	80,000	120,000	180,000	270,000	270,000	270,000
	야 간 "	110,000	170,000	280,000	400,000	400,000	400,000
	리틀 야구장	주 간 3시간	56,000	84,000	180,000	270,000	270,000
실내야구연습장	주 간 2시간	30,000	45,000	65,000	110,000	160,000	160,000
	야 간 "	45,000	65,000	90,000	135,000	195,000	195,000
스퀘시, 라켓볼장	주 간 1시간	20,000	30,000	40,000	60,000	60,000	60,000
	야 간 "	30,000	45,000	60,000	90,000	90,000	90,000
파크볼프장	주 간 2시간	50,000	80,000	-	-	-	-
	야 간 "	80,000	120,000	-	-	-	-
비 고	주 간 2시간	50,000	80,000	-	-	-	-
	야 간 "	80,000	120,000	-	-	-	-
○ 축구전대구장 라인바깥은 사용자가 함 ○ 일반체육관의 천연잔디축구장은 인조잔디구장의30%를 가산함. 단 토사축구장은 무료 ○ 주경기장 사용료는 육상장, 축구전대구장 사용료를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테니스장의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30%, 체육회관 연회장, 이벤트홀의 야간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의20%를 가산함 ○ 기온시간을 초과한 사용허가 시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환산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단, 평상장은 30분 단위의 환산요금 적용할 수 있다. ○ 상기의 전용사용료는 부속시설 사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부속시설 사용 시는 별도 사용료별표 5를 납부하여야 한다.							

고양시 고시 제2014 - 249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시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8. 26.

고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공양왕길 49-11 외2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지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토지정보과(☎8075-3096 ~ 8)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8. 2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고양시 도로명주소 신규고시 조서

연 번	종 전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도로명주소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부 여 사 유	비 고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937-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공양왕길 49-1	20140826	20000727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의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354-1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1로1길 23-12	20140826	2012060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345-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2로 29	20140826	2012060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345-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2로 31-1	20140826	2012060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110-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로 457	20140826	20090710	광역도로로 북한산 아래를 지나는 큰 도로	
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57-6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193번길 34	20140826	20100126	삼송로 시점에서 1930m에 위치한 도로	
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57-106, 57-6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193번길 34-1	20140826	20100126	삼송로 시점에서 1930m에 위치한 도로	
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354-1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 20	20140826	20120601	삼송동과 원흥동에서 한자씩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354-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 8	20140826	20120601	삼송동과 원흥동에서 한자씩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1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353-1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1길 13-5	20140826	20120601	삼송동과 원흥동에서 한자씩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1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선유동 310-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선유길 97-46	20140826	2009091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1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761-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유산길50번길 74	20140826	20100126	유산길 시점에서 500m에 위치한 도로	

1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67-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12번길 35	20140826	20100126	토당로 시점에서 120m에 위치한 도로	
1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506-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113-101	20140826	20090710	광역도로로 통일을 기원하는 의미의 도로명	
1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696-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수로14번길 56	20140826	20100126	화수로 시점에서 140m에 위치한 도로	
1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379-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감내길 25-14	20140826	20100126	고유지명을 도로명에 적용	
1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37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감내길 25-18	20140826	20100126	고유지명을 도로명에 적용	
1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380-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감내길 25-23	20140826	20100126	고유지명을 도로명에 적용	
1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179-1, 1380-7, 1380-1, 1180-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감내길 25-27	20140826	20100126	고유지명을 도로명에 적용	
2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225-2, 22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견달산로210번길 47-7	20140826	20100126	견달산로 시점에서 2100m에 위치한 도로	
2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동 61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로 216	20140826	20090911	범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2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종산동 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로 48	20140826	20090911	범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2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558-2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138번길 99-16	20140826	20100126	성현로 시점에서 1380m에 위치한 도로	
2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38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로 33-6	20140826	20111202	범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2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560-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2로 37	20140826	20110715	식사지구내 마을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우리시 도로명주소 변경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 월 26일

고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 경기도 고양시 서오릉로 716번길 63-6 외 4건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토지정보과 (☎8075-3096 ~ 8)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8. 2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고양시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						
연번	종전 주소(지번주소)		도로명주소(새주소)	관련지번 변경일	변경 사유	비고
	변 경 전	변 경 후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377-1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377-4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716번길 63-6	2014-08-26	관련지번변경	
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1945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1945-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 75	2014-08-26	관련지번변경	
3	경기도 고양시 행주내동 151	경기도 고양시 행주내동 151-1, 151-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15번길 64-1	2014-08-26	관련지번변경	
4	경기도 고양시 행주내동 151	경기도 고양시 행주내동 151-2, 151-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15번길 64-4	2014-08-26	관련지번변경	
5	경기도 고양시 행주내동 151	경기도 고양시 행주내동 151-2, 151-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15번길 62	2014-08-26	관련지번변경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시 건물등의 멸실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6일
고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12번길 35 외 2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토지정보과(☎8075-3096 ~ 8)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8. 2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양시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폐지일	폐지 사유	별실건물 고시일자	법정동	비고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12번길 35	2014-08-26	신축으로 인한 건물멸실	2011.7.29.	토당동	
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로 48	2014-08-26	신축으로 인한 건물멸실	2011.7.29.	중산동	
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193번길 34	2014-08-26	신축으로 인한 건물멸실	2011.7.29.	삼송동	

고양시 고시 제2014-252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150호선 (前소로1-1, 소로3-3, 소로3-13호선):동산취락}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우리시 덕양구 동산동 176-2번지 일원에 덕양구(건설과)에서 시행중인 도시계획시설{소로1-150(前소로1-1, 소로3-3, 소로3-13호선:동산취락)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계획 축소 등의 사유로 실시계획(변경) 신청되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031-8075-3145) 및 덕양구청 건설과(☎ 031-8075-530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2014년 8월 26일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176-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 동산취락 도로 개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사업계획축소에 따른 규모 변경소로3-3, 3-13호선 제척)

구분	규 모				연장 (m)	면적 (㎡)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결 정	소로	1	1	10	623.0		
	소로	1	150	10	623.0		노선명 변경
금회시행	소로	1	1	10	180.0	1,779	당초
						1,779	변경
결 정	소로	3	13	6	20.0		
금회시행	소로	3	13	6	0	126	당초
						0	변경
결 정	소로	3	3	6	55.0		
금회시행	소로	3	3	6	0	317	당초
						0	변경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성명 : 고양시장(덕양구 건설과)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 실시계획인가일 ~ 2014.12.30.
-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 ~ 2015.12.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 변경 “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 성명 : 변경 “바”항과 동일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다, 바”항과 같음

2. 관계도면 : “계재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목	지 면 적 (m ²)	편 입 면 적 (m ²)	소 유 자			권리자의 주소 성명			비고
		동	지번				성 명	지 분	주소	권리의 종류	성명	주소	
		- 동산취락(소로1-1호선)											
1	당초	동산동	176-3	전	29	29	고양시						
	변경	동산동	176-3	전	29	29	고양시						
2	당초	“	64-1	대	4	4	고양시						
			64-2	대	5	5	고양시						
	변경	“	64-1	대	4	4	고양시						
			64-2	대	5	5	고양시						
3	당초	“	63-48	대	145	145	고양시						
	변경	“	63-48	대	145	145	고양시						
4	당초	“	63-49	대	10	10	고양시						
	변경	“	63-49	대	10	10	고양시						
5	당초	“	61-5	대	105	18	고양시						
	변경	“	61-5	대	105	18	고양시						
6	당초	“	60-1	대	493	34	고양시						
	변경	“	60-1	대	493	34	고양시						
7	당초	“	315	구	4,881	1,380	국		건설부				
	변경	“	315	구	4,881	1,380	국		건설부				
8	당초	“	186-1	답	84	84	고양시						
	변경	“	186-1	답	84	84	고양시						
9	당초	“	194-18	답	28	28	고양시						
			194-19	답	1	1	고양시						
	변경	“	194-18	답	28	28	고양시						
			194-19	답	1	1	고양시						
10	당초	“	194-15	대	3	3	고양시						
	변경	“	194-15	대	3	3	고양시						
11	당초	“	194-17	도	16	16	고양시						
	변경	“	194-17	도	16	16	고양시						
12	당초	“	194-16	답	22	22	고양시						
	변경	“	194-16	답	22	22	고양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목	지 면 적 (㎡)	편 입 면 적 (㎡)	소 유 자			관리자의 주소 성명			비 고
		동 · 리	지번				성 명	지 분	주소	관리의 종류	성명	주소	
		- 소로 3-13호선											
1	당초	동산동	315-1	구	641	6	국		건설부				
	변경	동산동	315-1	구	641	0	국		건설부				
2	당초	“	315	구	4,881	120	국		건설부				
	변경	“	315	구	4,881	0	국		건설부				
		- 소로 3-3호선											
1	당초	동산동	315	구	4,881	313	국		건설부				
	변경	동산동	315	구	4,881	0	국		건설부				
2	당초	동산동	176-2	전	301	4	이석근		22				
	변경	“	176-2	전	301	0	이석근		22				

고양시 고시 제2014-253호

도시계획시설(대자1-5호 주차장: 대자동마을 주차장 조성공사)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983-8번지 일원에 추진 예정인 도시계획시설(대자1-5호 주차장: 대자동마을 주차장 조성공사)사업에 대하여, 노정분님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되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75-3145)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14년 8월 26일
고 양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983-8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대자1-5호 주차장)사업
- 명칭: 대자동마을 주차장 조성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시행 내용

구 분	시설명	면적(㎡)	위치	비고
결정	대자1-5주차장	978.0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983-8번지 일원	
시행	대자1-5주차장	978.0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983-8번지 일원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984-1번지
- 성명 : 노 정 분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4.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붙임

사. 법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2. 관계도면 : “계재생략“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순 번	소재지	지번	공 부 상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류	
1	대자동	983-8	전	916㎡	916㎡	고양시 덕양구 성령길 2(대자동)	노정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984-1	대한불교조 동종 연화사	채무자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신천동)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근저당권 지상권	
								고양시 덕양구 성령길 2(대자동)	황오익	채무자	
									연화사		
								고양시 일산동구 공릉천로 64,205동 1403호(사리현동,동 문아파트)	노정자		
								고양시 덕양구 성령길 2(대자동)	노정분		
								김포시 양촌면 첫섬로 142-14	문승실	근저당권	
2	"	983-4	답	141㎡	34㎡		고양시				
3	"	984-3	도	149㎡	1㎡		고양시				
4	"	984-6	도	37㎡	27㎡		고양시				

고양시 공고 제2014- 1183호

도시계획시설(중로3-97호선 소개울길)사업 공사완료 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시행한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766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중로3-97호선 소개울길)사업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였기에 같은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2014. 08. 26.
고 양 시 장

○ 공사완료 내용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977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 명칭 : 중로3-97호선(소개울길)
-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노선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비고
도로	중로3-97호선 (소개울길)	10~12	378	4,299.3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54번지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대리인 서울지역본부장)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3.05.27 ~ 2014.12.31
- 바.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다”항과 같음.

고양시 공고 제2014-1184호

도시계획시설(대로2-11호선: 호국로 가감차로 설치공사)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공람공고

1. 우리시 덕양구 대자동 69-4번지 일원에 추진 예정인 도시계획시설(대로2-11호선: 호국로 가감차로 설치공사)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되어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전 열람공고 합니다
3.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를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8월 26일
고 양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69-4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대로2-11호선)사업
- 명칭: 호국로(강강술래) 가감차로 설치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시행 내용

구분	규 모				연장 (m)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결정	대로	2	11	30~46	11,160	성사동 523-5번지	벽제동 산38-14번지	
금회 시행	대로	2	11	6	80	대자동 70번지	대자동 산117-2번지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호국로 1526
- 성명 : (주)강강술래 심태업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5.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붙임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 “바”항과 같음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다, 바”항과 같음

자.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시보게재일로부터 15일간

차.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고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75-3145)

2. 관계도면 : “계재생략“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일련 번호	소 재 지			공부상 면적	실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 • 리	지번	지목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1	대자동	70	잡	664	15	덕양구 호국로 1526	심태업				
2	“	75-7	임	574	59	덕양구 호국로 1526	심태업				
3	“	69-4	도	833	29	국토교통부	국				
4	“	70-2	잡	172	104	국토교통부	국				
5	“	77-1	도	112	21	국토교통부	국				
6	“	77-4	전	69	52	국토교통부	국				
7	“	산115-8	도	298	178	국토교통부	국				
8	“	산115-11	임	173	49	국토교통부	국				
9	“	산117-1	도	496	23	국토교통부	국				
10	“	산117-2	임	112	50	국토교통부	국				
합 계				3,503	580						